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1. . . (제 회)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총리 (인사혁신처 소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국가공무원법 개정(법률 제18237호, 2021.6.8. 공포, 2021.12.9. 시행)으로 공무상 질병휴직의 기간이 연장되고, 겸임 범위가 확대되며, 가족돌봄휴직의 요건이 확대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는 한편,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공무상 질병휴직 연장절차 등 규정(안 제57조의7)

- 1)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 확대를 위한 절차로서, 의학적 소견 등을 고려하여 휴직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질병휴직위원회 자문 절차 필수화
- 2) 공무상 질병휴직 연장 시에는 같은 사유로 인한 공무상 요양기간 중인 경우에 가능하도록 개선

나. 겸임 규정 정비(안 제40조)

겸임을 특정직공무원까지 가능하도록 한 국가공무원법 개정 취지에 맞게 겸임의 목적과 요건에 관련한 규정을 경력직공무원 범위에 맞게 정비하고, 겸임이 가능한 사립대학 교원의 범위를 「고등교육법」 상

사립학교의 교원으로 확대

다. 채용후보자 명부 유효기간 계산방식 개선(안 제12조의2)

병역 복무 중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채용후보자가 된 경우 의
무복무 기간(4년 이내)은 채용후보자 명부 유효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않도록 규정

라. 가족돌봄휴직 요건 정비(안 제57조의8)

국가공무원법 개정으로 가사휴직이 가족돌봄휴직으로 요건이 확대됨
에 따라 문구 정비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 7. 27. ~ 9. 6.) 예정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법 제38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사유로 임용되지 못한 기간”이란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 중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한 자가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경우에 그 등재일로부터 그 병역에 따른 의무복무 만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다만, 이 기간은 4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22조의3제1항제1호 중 “(졸업일부터 선발일까지의 기간)”을 “(졸업일)로, “이내인”을 “이내에 있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졸업일부터 선발일까지의 기간)”을 “(졸업일)로, “이내인”을 “이내에 있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을 “소속 장관”으로 한다.

제40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겸임”을 “겸임(제4호에 따른 겸임을 제외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일반직공무원으로 겸임하는 경우에는”을 “경력직공무원으로 겸임하는 경우에는”으로, “일반직공무원으로 겸임하는 경우는”을 “경력직공무원으로 겸임하는 경우는”으로 하

고, 같은 항 제1호 중 “일반직공무원”을 “다른 경력직공무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일반직공무원”을 각각 “경력직공무원”으로, 같은 호 중 “사립의 전문대학·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그 부설연구소의 교수(부교수·조교수를 포함한다),”를 “「고등교육법」 상 사립학교의 교원 또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일반직공무원과”를 “경력직공무원과”로, “일반직공무원 간”을 “경력직공무원 간”으로 한다.

4. 기타 다른 법령에서 검임하도록 하는 경우

제57조의7제1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에 따라 휴직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등으로 질병휴직위원회를 구성하여 휴직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자문할 수 있다. 다만, 법 제72조제1호 단서에 따라 공무상 질병휴직이 인정된 공무원에 대해 같은 사유의 휴직을 연장하려는 경우로서 총 휴직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질병휴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제57조의7제3항(종전의 제2항) 본문 중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휴직”을 “휴직”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공무상 요양 승인 또는 요양급여 결정을 받은 기간(연장된 요양기간을 포함한다)이 만료된 이후에는 같은 사유의 공무상 질병휴직을 연장하거나 새롭게 명할 수 없다.

제57조의7제4항(중전의 제3항) 중 “질병휴직 중인 경우에는”을 “질병휴직을 한 경우(질병휴직이 종료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제57조의8제1호 본문 중 “간호하는”을 “돌보는”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간호할 수 밖”을 “돌볼 수밖”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본문 중 “간호하는”을 “돌보는”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간호할 수 밖”을 “돌볼 수밖”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 제57조의 7 및 제57조의8의 개정사항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무상 질병휴직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의7의 개정규정(제3항은 제외한다)은 이 영 시행 당시 중전의 규정에 따라 휴직하였거나 휴직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공무상 질병휴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질병휴직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57조의7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정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의2(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 (생략)	제12조의2(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법 제38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사유로 임용되지 못한 기간”이란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 중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한 자가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경우에 그 등재일로부터 그 병역에 따른 의무복무 만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다만, 이 기간은 4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22조의3(지역 인재의 추천 채용) ① 법 제26조의4제1항에 따라 수습으로 근무하는 사람(이하 “수습직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선발한다.	제22조의3(지역 인재의 추천 채용) ① ----- ----- ----- ----- -----.
1. 학사학위과정이 개설된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및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학교 중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학교의 졸업자(졸업일부터	1. ----- ----- ----- ----- ------(졸업일----

선발일까지의 기간이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간 이내인 사람만 해당한다) 또는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해당 학교의 장의 추천을 거쳐 인사혁신처장이 임용예정 계급을 일반직 7급 공무원으로 하여 선발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설치된 고등학교 또는 전문학사 학위과정이 개설된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및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학교 중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학교의 졸업자(졸업일부터 선발일까지의 기간이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간 이내인 사람만 해당한다) 또는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해당 학교의 장의 추천을 거쳐 인사혁신처장이 임용예정 계급을 일반직 9급 공무원으로 하여 선발

② 임용예정 계급이 7급인 수습직원의 수습기간은 수습근무(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포

----- 이내에
있는 -----

2. -----

----- (졸업일

----- 이
내에 있는 -----

② -----

함한다. 이하 같다)가 시작된 날
부터 1년으로 하고, 임용예정
계급이 일반직 9급인 수습직원
의 수습기간은 수습근무가 시작
된 날부터 6개월로 한다. 다만,
인사혁신처장은 수습직원의 근
무태도가 성실하지 아니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
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수습직원
의 수습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 ⑫ (생략)

제40조(겸임)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2조의3에 따라 겸임하게
할 수 있다.

1. ~ 3. (생략)

<신설>

② 제1항에 따른 겸임은 본직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따라 일반직공무
원으로 겸임하는 경우에는 임기
제공무원으로 임용하여야 하며,

-----.

소속 장관-----

-----.

③ ~ ⑫ (현행과 같음)

제40조(겸임) ① -----

-----.

1. ~ 3. (현행과 같음)

4. 기타 다른 법령에서 겸임하
도록 하는 경우

② ----- 겸임(제4호에 따
른 겸임을 제외한다)-----

-----.

----- 경력직공무
원으로 겸임하는 경우에는 ---

제4호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으로 겸임하는 경우는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고등학교 이상의 각급 학교의 교육공무원과 직무 내용이 유사한 일반직공무원 간

2. 연구직렬 공무원과 직무 내용이 유사한 다른 일반직공무원 간

3. 일반직공무원과 직무 내용이 유사한 사립의 전문대학·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그 부설연구소의 교수(부교수·조교수를 포함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기관의 임직원 간

4. 일반직공무원과 직무 내용이 관련이 있는 다른 일반직공무원 간

③·④ (생략)

제57조의7(질병휴직) ① 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라 휴직을 명하려는 경우에는 「공무원 재해

----- 경력직공무원으로 겸임하는 경우는 -----
-----.

1. -----

----- 다른 경력직공무원 -----

2. -----
----- 경력직공무원 -----

3. 경력직공무원-----
----- 「고등교육법」 상 사립
----- 학교의 교원 또는 -----

4. 경력직공무원과 -----
----- 경력직공무원
----- 간

③·④ (현행과 같음)

제57조의7(질병휴직) ① -----

보상법」 제24조에 따른 요양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나 그 밖에 휴직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해당 공무원에게 요구하여 제출받아 휴직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관계 전문가 등으로 질병휴직위원회를 구성하여 휴직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자문할 수 있다.

<신 설>

② 법 제72조제1호 단서에 따라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휴직할
수 있는 경우는 「공무원 재해

----- . <후단 삭제>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에 따라 휴직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등으로 질병휴직위원회를 구성하여 휴직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자문할 수 있다. 다만, 법 제72조제1호 단서에 따라 공무상 질병휴직이 인정된 공무원에 대해 같은 사유의 휴직을 연장하려는 경우로서 총 휴직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질병휴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③ _____

휴식 _____

보상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은 경우
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40조에 따른 요양급여 결정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공무상 요양 승인 또는 요양급
여 결정을 받은 사유와 같은 사
유로 질병 또는 부상이 계속되
는 경우에는 승인 또는 결정받
은 공무상 요양기간이나 요양급
여 지급이 끝난 후에도 공무상
질병휴직을 인정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③ 법 제72조제1호 단서에 따라
공무상 질병휴직이 인정된 공무
원이 같은 호 본문에 따른 질병
휴직 중인 경우에는 해당 질병
휴직을 취소하고 그 발령일로
소급하여 제2항에 따른 공무상
질병휴직을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

-----, <단서
삭제> -----

-----.

이 경우 공무상 요양 승인 또는
요양급여 결정을 받은 기간(연
장된 요양기간을 포함한다)이
만료된 이후에는 같은 사유의
공무상 질병휴직을 연장하거나
새롭게 명할 수 없다.

④ -----

----- 질병
휴직을 한 경우(질병휴직이 종
료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

-----.

⑤ ----- 제4항 -----

정한 사항 외에 질병휴직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 ----- -----.
제57조의8(가사휴직) 법 제71조제2항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57조의8(가사휴직) ----- ----- ----- -----.
1. 조부모를 <u>간호하는</u> 경우: 본인 외에는 조부모의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다만, 다른 직계비속이 있으나 질병, 고령(高齡), 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로 본인이 <u>간호할 수 밖</u>에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1. ----- <u>돌보는</u> ----- ----- -----. ----- ----- <u>돌볼 수밖</u>----- -----.
2. 손자녀를 <u>간호하는</u> 경우: 본인 외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 다만, 다른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가 있으나 질병, 고령, 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로 본인이 <u>간호할 수 밖</u>에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2. ----- <u>돌보는</u> ----- ----- -----. ----- ----- ----- <u>돌볼 수밖</u>----- -----.

< 의안 소관 부서명 >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	
연 락 처	(044) 201 - 8295